

# 공 보

**제514호 2015. 12. 16.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15-16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3
거창군 고시 제2015-162호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	4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1076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거창군 공고 제2015-107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7
거창군 공고 제2015-1090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7
거창군 공고 제2015-1091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3
거창군 공고 제2015-1096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가조골프장)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51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고시 제2015-160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거창군수

신청인	거창군수 (건설과)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천명	황강 / 계수천 / 거창위천 (지방하천)		
공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황강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848번지 일원
		계수천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20번지 일원
		거창위천 (서바리교)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510번지 일원
		거창위천 (황점큰들교)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945번지 일원
	면 적	황강	일시점용 : 358.2㎡
		계수천	일시점용 : 326.0㎡
		거창위천 (서바리교)	일시점용 : 10.0㎡
		거창위천 (황점큰들교)	일시점용 : 10.0㎡
점용기간	2015년 12월 11일 ~ 2016년 01월 10일		
목적 및 사 유	교각기초 단면 보강공사 및 하상정리		

# 고 시 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송정지구 ○○공동주택)
2. 사업주체
  - 가. 상호 :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당초)
  - 가.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 나. 대표자 : 이인식(당초)
  - 나. 대표자 : 이창희(변경)
  - 다.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당초)
  - 다.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대치동, 신안빌딩 12층(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 가.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송정도시개발사업지구 6B-1L, 6B-2L
  - 나. 대지면적 : 32,070.58㎡
  - 다. 연면적 : 94,787.789㎡
  - 라. 규모 : 아파트 9동(677세대), 보육시설/경로당 1동, 상가 1동, 경비실 2동
  - 마. 형별 : 62A형(전용면적 62.9966㎡), 62B형(전용면적 62.9877㎡)  
74형(전용면적 74.9706㎡), 84A형(전용면적 84.8486㎡)  
84B형(전용면적 84.9607㎡)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18년 5월

##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 거 창 군 수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8,982,860	482,901,391	6,081,469	1.26%
일 반 회 계	429,437,376	423,081,770	6,355,606	1.50%
특 별 회 계	59,545,484	59,819,621	△274,137	△0.4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3,865,642	23,814,222	51,420	0.22%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896,327	10,896,327	0	0.00%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2,969,315	12,917,895	51,420	0.40%
기 타 특 별 회 계	35,679,842	36,005,399	△325,557	△0.9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1,530	840,106	1,424	0.1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9,261,577	19,261,577	0	0.0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16,331	736,331	△20,000	△2.72%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177,658	9,575,059	△397,401	△4.15%
수질개선 특별회계	4,783,844	4,693,424	90,420	1.9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63,902	863,902	0	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35,000	35,000	0	0.00%

##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8,982,860	482,901,391	6,081,469	1.26%
지방세수입	19,421,446	19,421,446	-	0.00%
세외수입	30,132,165	28,489,678	1,642,487	5.77%
경상적세외수입	19,199,740	19,595,717	△395,977	△2.02%
임시적세외수입	10,932,425	8,893,961	2,038,464	22.92%
지방교부세	192,689,000	191,889,000	800,000	0.42%
조정교부금등	17,412,000	14,690,000	2,722,000	18.53%
보조금	142,498,344	141,651,782	846,562	0.60%
국고보조금등	112,755,650	112,660,607	95,043	0.08%
시도비보조금등	29,742,694	28,991,175	751,519	2.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829,905	86,759,485	70,420	0.08%
보전수입등	67,090,042	67,090,042	-	0.00%
내부거래	19,739,863	19,669,443	70,420	0.36%

###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88,982,860	482,901,391	6,081,469	1.26%
일 반 공 공 행 정	25,995,271	26,606,275	△ 611,004	△ 2.30%
공 공 질 서 및 안 전	3,749,448	3,739,598	9,850	0.26%
교 육	3,834,284	3,941,384	△ 107,100	△ 2.72%
문 화 및 관 광	19,464,253	19,967,794	△ 503,541	△ 2.52%
환 경 보 호	59,269,855	59,575,514	△ 305,659	△ 0.51%
사 회 복 지	88,094,002	89,664,018	△ 1,570,016	△ 1.75%
보 건	8,089,916	8,025,847	64,069	0.80%
농 립 해 양 수 산	113,885,878	111,540,545	2,345,333	2.10%
산 업 · 중 소 기 업	11,407,348	12,111,895	△ 704,547	△ 5.82%
수 송 및 교 통	21,040,565	21,330,382	△ 289,817	△ 1.3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6,614,494	48,071,468	△ 1,456,974	△ 3.03%
예 비 비	30,235,517	19,461,211	10,774,306	55.36%
기 타	57,302,029	58,865,460	△ 1,563,431	△ 2.66%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2. 제정이유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개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요금인상

-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제15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1 :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나. 일부개정

- 하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 및 체납액 산정방식 월할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정(안 제29조)

### 다. 규정신설

- 하수도요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감면 규정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안 제26조 제1항2호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안 제17조제1항2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안 제26조 제1항3호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안 제17조제1항3호

4. 입법예고기간 : 2015. 12 . 10 . ~ 2015. 12 . 31 .

5.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670-80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055-940-8418, Fax055-940-8418 또는 메일 alsatao@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10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개정이유

-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요금인상

-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제15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1 :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나. 일부개정

- 하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 및 체납액 산정방식 월할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정(안 제29조)

### 다. 규정신설

- 하수도요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감면 규정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안 제26조 제1항2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안 제26조제1항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나. 예산조치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2 . 10 . ~ 2015. 12 . 31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 3호, 4호를 각각 4호, 5호, 6호로 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제29조의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는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 26조 (감면) ① (생략)</p> <p>1. (생략)</p> <p>&lt;신 설&gt;</p> <p>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p> <p>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 29조 (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u>100분의 3</u>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lt;신 설&gt;</p>	<p>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u>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 26조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p> <p>3. 「<u>장애인복지법</u>」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p> <p>4.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5.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p> <p>6.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가산금)----- ----- ----- ----- ----- ---<u>100분의 2</u>----- -----</p> <p><u>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u></p> <p><u>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u></p>

현행				개정안			
<p><b>[별표 1]</b>  <b>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b>  (제15조제2항 관련)</p> <p>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생략)</p> <p>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p>				<p><b>[별표 1]</b>  <b>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b>  (제15조제2항 관련)</p> <p>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생략)</p> <p>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p>			
업종구분	사용량구분 (m <sup>3</sup> )	m <sup>3</sup> 당 단가 (원)	비고	업종구분	사용량구분 (m <sup>3</sup> )	m <sup>3</sup> 당 단가 (원)	비고
가정용	1 ~ 20	101		가정용	1 ~ 20	160	
	21 ~ 30	136			21 ~ 30	220	
	31 이상	182			31 이상	300	
일반용	1 ~ 30	120		일반용	1 ~ 30	160	
	31 ~ 50	153			31 ~ 50	200	
	51 ~ 100	186			51 ~ 100	250	
	101 ~ 300	215			101 ~ 300	290	
	301 이상	265			301 이상	350	
산업용	1톤당	120		산업용	1톤당	160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9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개정이유

-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감면 규정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안 제17조제1항2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안 제17조제1항3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 나. 예산조치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2 . 10 . ~ 2015. 12 . 31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3호, 4호, 5호, 6호를 각각 4호, 5호, 6호, 7호, 8호로 하고, 제17조제1항제2호, 3호 및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sup>3</sup>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sup>3</sup> 단,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감면) ① (생략)</p> <p>1. (생략)</p> <p>&lt;신설&gt;</p> <p>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p> <p>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p> <p>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호이동 2015.9.23)</p> <p>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2.10.16. 호이동 2015.9.23.)</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③ ~ ⑤ (생략)</p>	<p>제17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sup>3</sup></p> <p>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3급)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sup>3</sup></p> <p>4.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p> <p>5.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p> <p>6.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호이동 2015.9.23)</p> <p>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2.10.16. 호이동 2015.9.23.)</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 □ 「하수도법」

[시행 2015.6.4.]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 □ 「하수도법시행령」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거 창 군 수

### 1.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 2. 제정이유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등을 개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요금인상

-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제27조 및 제33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2 :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 별표 4 :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 나. 일부개정

- 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 및 체납액 산정방식 월할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정(안 제34조)

#### 다. 규정신설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 감면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안 제37조제1항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안 제37조 제1항4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안 제37조제1항5호)
  -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라. 규정삭제

-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일부 삭제(안 제11조제1항제1호)
- 과태료 등 부과 조항 삭제(안 제45조)
  -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단서 조항 일부 삭제(안 제49조제1항)
  -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에 과태료 항목 삭제(안 제50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12 . 10 . ~ 2015. 12 . 31 .

5.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055-940-8418, Fax055-940-8418 또는 메일 alsatao@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10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 1.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등 개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요금인상

-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제27조 및 제33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2 :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 별표 4 :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 나. 일부개정

- 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 및 체납액 산정방식 월할에서 일할 계산으로 개정(안 제34조)

### 다. 규정신설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 감면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안 제37조제1항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안 제37조제1항4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안 제37조제1항5호)
  -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라. 규정삭제

-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일부 삭제(안 제11조제1항제1호)
- 과태료 등 부과 조항 삭제(안 제45조)
  -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단서 조항 일부 삭제(안 제49조제1항)
  -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에 과태료 항목 삭제(안 제5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 수도법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도법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표준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표준급수조례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나. 예산조치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2 . 10 . ~ 2015. 12 . 31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해당여부 검토 후 기술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의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를 신설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37조제5항, 제37조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sup>3</sup>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m<sup>3</sup>
-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하여 적용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량이 5m<sup>3</sup>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 “과태료” 항목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략)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1. ----- ----- -----	1. ----- ----- -----	1. ----- ----- -----
2. (생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34조 (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 34조 (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4조(가산금)----- ----- ----- -----100분 의 2-----	제34조(가산금)----- ----- ----- -----100분 의 2-----	제34조(가산금)----- ----- ----- -----100분 의 2-----
<신 설>	<신 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름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름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름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② ~ ④ 생략</p> <p>&lt;신설&gt;</p> <p>제 43조 (포상금 지급)</p> <p>① 생략</p> <p>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p> <p>2. ~ 3.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p> <p>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하여 적용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p>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43조 (포상금 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2.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제45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 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 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49조(이의신청)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 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u>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u> <u>「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u> <u>따른다.</u></p> <p>② (생략)</p>	<p>제49조(이의신청)①----- ----- ----- ----- ----&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5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 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u>과태료</u>,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른다.</p>	<p>제 5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삭제 ----- ----- -----</p>

현행			개정안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	㎡당단가 (원)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	㎡당단가 (원)
가정용	1 ~ 20	530	가정용	1 ~ 20	700
	21 ~ 30	700		21 ~ 30	920
	31이상	920		31이상	1,210
일반용	1 ~ 30	665	일반용	1 ~ 30	800
	31 ~ 50	800		31 ~ 50	960
	51 ~ 100	930		51 ~ 100	1,120
	101 ~ 300	1,070		101 ~ 300	1,290
	301이상	1,200		301이상	1,450
산업용	1㎡당	620	산업용	1㎡당	810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13mm	750원		13mm	890원	
20 "	2,110원		20 "	2,490원	
25 "	3,390원		25 "	4,000원	
32 "	6,040원		32 "	7,110원	
40 "	10,190원		40 "	12,000원	
50 "	15,630원		50 "	18,390원	
75 "	37,910원		75 "	44,600원	
100 "	64,640원		100 "	76,050원	
150 "	140,840원		150 "	165,700원	

현행		개정안																													
<p>[별표 5] 과태료 처분기준(제45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내용</th> <th colspan="2">과태료</th> </tr> <tr> <th>사기,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th> <th>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th> </tr> </thead> <tbody> <tr> <td>1. 급수도용</td> <td>·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td> <td>500,000원</td> </tr> <tr> <td>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td> <td>·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td> <td>500,000원</td> </tr> <tr> <td>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td> <td>·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td> <td>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td> </tr> <tr> <td>4.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td> <td></td> <td>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td> </tr> <tr> <td>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td> <td></td> <td>200,000원</td> </tr> <tr> <td>6. 시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td> <td></td> <td>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td> </tr> <tr> <td>7. 정수처분 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td> <td>·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td> <td>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td> </tr> <tr> <td>8. 급수판매 금지</td> <td></td> <td>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td> </tr> </tbody> </table>		위반내용	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4.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6. 시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정수처분 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8. 급수판매 금지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삭제>
위반내용	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4.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 시설		200,000원																													
6. 시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정수처분 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8. 급수판매 금지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right;">상수도요금   <input type="checkbox"/> 신규   } 감면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해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width: 10%;">주   소</td> <td style="width: 30%;">거창군</td> <td colspan="3" style="width: 30%;">읍·면</td> </tr> <tr> <td></td> <td>성   명 (대표자)</td> <td>생년월일</td> <td></td> <td>성별</td> <td></td> </tr> <tr> <td></td> <td colspan="5">전화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 도 수 전 현 황</td> <td>주   소</td> <td colspan="4"></td> </tr> <tr> <td></td> <td>수용가 번   호</td> <td>업   종</td> <td>가정용</td> <td>구경</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대 상 자</td> <td>성   명</td> <td>주민등록 번호</td> <td></td> <td>성별</td> <td></td> </tr> <tr> <td></td> <td>관   계</td> <td>신청내용</td> <td colspan="3">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거창군수 귀하</b></p> <p>※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류</p> <p>※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신 청 인	주   소	거창군	읍·면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수 도 수 전 현 황	주   소						수용가 번   호	업   종	가정용	구경		감 면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성별			관   계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신 청 인	주   소	거창군	읍·면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수 도 수 전 현 황	주   소																																										
	수용가 번   호	업   종	가정용	구경																																							
감 면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성별																																							
	관   계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관련법령

### □ 「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제87조(과태료)** 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6.8.>
- 3의2. 삭제 <2011.7.28.>
- 3의3. 삭제 <2011.7.28.>
- 3의4. 삭제 <2011.7.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

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⑤ 삭제 <2010.5.25.>

⑥ 삭제 <2010.5.25.>

[법률 제8370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5.14.]

[별표 5] <개정 2014.6.30>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500	700	1,000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2호	200	250	300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3호	300	300	300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2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	법 제87조제2항제	300	300	300

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호의2			
아.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3호의3	300	300	300
자.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차. 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의2	300	300	300
카.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의3	300	300	300
타.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4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파.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5호	200	250	300
하.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5호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2)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거.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 6호	10	50	100
너.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 7호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30	40	50
2) 저수조청소업자		50	70	100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더.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 8호	50	70	100
러.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 6호	200	250	300
머.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 7호	300	300	300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 9호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00	100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표준급수조례」

[개정 2014.12.18.]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1.12.21>

② <삭제>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

여 시(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0.7.2>

####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정의 주요행사 및 일정 관련 담당부서장의 의견이 절실이 요구됨
- 문화공연, 거창군 주요 행사인 국화축제, 사과마라톤 등에 대한 의견제시와 방향설정을 통해 발전적 기획과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하여 문화센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추가 구성함  
(안 제2조 제3항)

4. 입법예고기간 : 2015. 12 . 11 . ~ 2015. 12 . 31 .

5.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기획감사실  
【☎055-940-3034, Fax055-940-3029 또는 메일 rlove0228@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55-94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11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 1. 개정이유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정의 주요행사 및 일정 관련 담당부서장의 의견이 절실이 요구됨
- 문화공연, 거창군 주요 행사인 국화축제, 사과마라톤 등에 대한 의견제시와 방향설정을 통해 발전적 기획과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하여 문화센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추가 구성함  
(안 제2조 제3항)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예산조치 : 없음
-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의뢰

4 입법예고 : 2015. 12 . 10 . ~ 2015. 12 . 31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u> <u>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u> 하며----- ----- -----</p>	<p>제2조(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u> <u>직속기관장,</u> <u>사업소장으로</u> 하며----- ----- ----- -----</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거창군수

### 1. 조 례 명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 현행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안의 보완 관련 규정에서 행정청이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보완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봄
-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보완을 요청했으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안서를 폐기하였으나, 제안서를 폐기하지 않고 주민에게 통보 후 원안대로 심사하여 처리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절차 준용

### 3. 주요내용

-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에서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함  
(안 제4조 제2항)

### 4. 입법예고기간 : 2015. 12 . 11 . ~ 2015. 12 . 31 .

5.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기획감사실  
【☎055-940-3034, Fax055-940-3029 또는 메일 rlove0228@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55-94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11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 1. 개정이유

- 현행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안의 보완 관련 규정에서 행정청이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보완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봄
-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보완을 요청했으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안서를 폐기하였으나, 제안서를 폐기하지 않고 주민에게 통보 후 원안대로 심사하여 처리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절차 준용

## 2. 주요내용

-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에서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함 (안 제4조 제2항)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예산조치 : 없음
-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의뢰

4 입법예고 : 2015. 12 . 10 . ~ 2015. 12 . 31 .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에서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조(제안의 보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u></p>	<p>제4조(제안의 보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u>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u></p>

## 관련법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가조골프장)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0-668호(2010.12.09)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16.

### 거 창 군 수

□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가조 골프장	체육시설	가조면 석강리 산41번지 일원	572,666	감)900.6	571,765.4	경고 668호 (2010.12.9)	경미한 변경

2.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가조골프장	• 면적변경 - 면적 : 572,666m <sup>2</sup> → 571,765.4m <sup>2</sup> (감 : 900.6m <sup>2</sup> )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산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인가 사항

가) 시행면적 : 571,765.4m<sup>2</sup>

나) 시행규모 : 대중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등

다) 토지이용계획

(단위:m<sup>2</sup>)

구 분	계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	비고
전 체	당초 572,666	당초 223,097	당초 4,299	당초 53,015	당초 292,255	
	변경 571,765.4	변경 129,083	변경 6,957	변경 48,442	변경 387,283.4	
금 회	당초 572,666	당초 223,097	당초 4,299	당초 53,015	당초 292,255	
	변경 571,765.4	변경 129,083	변경 6,957	변경 48,442	변경 387,283.4	

※변경사유 : 지적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공동시행)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 성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 성명 : 거창군수

5. 사업기간

- 당초 : 2011. 12. 1 ~ 2015. 11. 29
- 변경 : 2011. 12. 1 ~ 2016.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참조

7. 의견제출 및 열람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였으며,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055-940-3583), FAX(055-940-3579), E-mail :

ccho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면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주소	성명	
<b>합 계 (6필지)</b>				571,765.4	571,765.4						
1	가조면 석강리	1433	임	16,371.3	16,371.3		거창군				토지의 이동 (지적확정측량)
2	가조면 석강리	1434	임	3,690.1	3,690.1		거창군 외 1인				토지의 이동 (지적확정측량)
3	가조면 석강리	1435	임	2,304.0	2,304.0		거창군				토지의 이동 (지적확정측량)
4	가조면 석강리	1436	임	140,284.4	140,284.4		거창군 외 6인	채권자	대전서구 한밭대로 713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토지의 이동 (지적확정측량)
5	가조면 석강리	1437	임	45,470.8	45,470.8		거창군				토지의 이동 (지적확정측량)
6	가조면 석강리	1438	체	363,644.8	363,644.8		거창군 외 1인				토지의 이동 (지적확정측량)

## 2. 분묘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8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0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1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1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1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8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1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1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0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2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8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0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3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3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2	분묘(3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8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2	분묘(3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3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4	분묘(3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4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4	분묘(4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39-4	축대 (외축)	자연석 (700*30*25)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39-4	잔디조경	(500*700)cm	35㎡		“	
4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4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51 5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4	분묘(5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24	분묘(5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24	상석	오석 (100*67*25)cm	1EA		“	
		거창	가조	도	산24	반월석	화강암 (90*10*60)cm	2EA		“	
		거창	가조	도	산24	향로석	화강암 (33*18*20)cm	1EA		“	
		거창	가조	도	산24	축대 (내축)	경계석 (800*20*15)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24	축대 (외축)	견치석 (1800*20*6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24	잔디조경	(1200*1100)cm	132㎡		“	
5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4	분묘(5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24	상석	화강암 (100*62*32)cm	1EA		“	
		거창	가조	도	산24	반월석	화강암 (72*10*35)cm	1EA		“	
		거창	가조	도	산24	향로석	화강암 (23*20*20)cm	1EA		“	
		거창	가조	도	산24	축대 (외축)	자연석 (800*20*14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24	잔디조경	(1000*1000)cm	100㎡		“	
5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4	분묘(5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24	상석	화강암 (100*65*25)cm	1EA		“	
5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4	반월석	화강암 (72*10*42)cm	1EA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24	향로석	화강암 (46*20*20)cm	1EA		“	
		거창	가조	도	산24	축대 (내축)	자연석 (500*20*25)cm	1식		“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도	산24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0*25)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24	잔디조경	(1000*1000)cm	100㎡			
5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3	분묘(59)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도리	한규환	
		거창	가조	도	산23	잔디조경	(600*800)cm	48㎡			
60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6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3	분묘(61)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도리	한규환	
		거창	가조	도	산23	축대 (내축)	자연석 (300*15*20)cm	1식			
		거창	가조	도	산23	축대 (외축)	자연석 (1100*15*45)cm	1식			
		거창	가조	도	산23	잔디조경	(1100*77)cm	77㎡			
6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2	분묘(62)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도리	한무상	
		거창	가조	도	산22	상석	화강암 (92*55*27)cm	1EA			
		거창	가조	도	산22	향로석	화강암 (20*15*10)cm	1EA			
		거창	가조	도	산22	잔디조경	(700*800)cm	56㎡			
6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3	분묘(63)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도리	한규환	
		거창	가조	도	산23	축대 (외축)	자연석 (700*20*45)cm	1식			
		거창	가조	도	산23	잔디조경	(900*700)cm	63㎡			
6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22	분묘(6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6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9	분묘(6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6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9	분묘(6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6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9	분묘(6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70 7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축대 (외축)	자연석 (1000*30*3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800*800)cm	64㎡		“	
7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7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500*500)cm	35㎡		연고자 불명	
7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축대 (외축)	자연석 (700*30*5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500*700)cm	25㎡		“	
7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500*500)cm	25㎡		“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7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축대 (외축)	자연석 (500*30*3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500*500)cm	25㎡		“			
7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500*500)cm	25㎡	“	“			
7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7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500*500)cm	25㎡		“			
7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9	분묘(79)	봉분(2*2.5)	1기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87-3번지 로얄@2차 1-102	정순조			
		거창	가조	석강	산9	잔디조경	(600*500)cm	30㎡					
8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9	분묘(80)	봉분(2*2.5)	1기					
		거창	가조	석강	산9	잔디조경	(700*600)cm	42㎡					
8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83)	유연단장	1기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700*700)cm	49㎡					
84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8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8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9	분묘(8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9	상석	화강석	1식		“			
8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0	분묘(8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0	상석	화강암 (93*63*23)cm	1EA		“			
		거창	가조	도	산10	향로석	화강암 (20*15*15)cm	1EA		“			
		거창	가조	도	산10	잔디조경	(1000*700)cm	70㎡		“			
90	묘지	거창	가조	도	산9	분묘(9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9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9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500*400)cm	20㎡		연고자 불명			
9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800*800)cm	64㎡		“			
93	묘지	거창	가조	도	산9	분묘(9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9	상석	화강석 (90*60*22)cm	1EA		“			
		거창	가조	도	산9	반월석	화강석 (70*10*50)cm	1EA		“			
		거창	가조	도	산9	향로석	화강석 (15*15*20)cm	1EA		“			
		거창	가조	도	산9	축대 (외축)	자연석 (800*20*30)cm	1식		“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도	산9	망두석	자연석 (22*120)cm	2EA		“	
		거창	가조	도	산9	잔디조경	(800*800)cm	64㎡		“	
94 9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상석	화강석 (93*62*25)cm	1EA		“	
		거창	가조	도	산12	향로석	화강석 (18*15*20)cm	1EA		“	
		거창	가조	도	산12	축대 (외축)	자연석 (1100*50*9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1100*700)cm	77㎡		“	
9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축대 (외축)	자연석 (700*50*3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700*600)cm	42㎡		“	
97 98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9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5*3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1000*800)cm	80㎡		“	
9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9	분묘(9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00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10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축대 (외축)	자연석 (500*20*3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700*500)cm	35㎡		“	
10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10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0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10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5*3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1000*800)cm	80㎡		“	
103 104 10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10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10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분묘(10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12	축대 (외축)	자연석 (1500*30*40)cm	1식		“	
		거창	가조	도	산12	잔디조경	(1200*1000)cm	120㎡		“	
10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10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도	산13	상석	화강석 (80*50*15)cm	1EA		“	
		거창	가조	도	산13	향로석	화강석 (15*15*15)cm	1EA		“	
		거창	가조	도	산13	잔디조경	(700*600)cm	42㎡		“	
10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10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08	묘지	거창	가조	도	산13	분묘(10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0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0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5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6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1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1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5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6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2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2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3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3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3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1	분묘(13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3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35 136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35)	봉분(2*2.5)	1기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56	이병춘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36)	봉분(2*2.5)	1기	현대빌라 2층 201		
		거창	가조	석강	산7	상석	화강암 (107*76*28)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혼유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받침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하박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향로석	화강암 (60*18*20)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0*50)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둘레석	화강암 (167*273*60)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7	망두석	(27*180)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7	잔디조경	(900*800)cm	72㎡			
137 13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37)	봉분(2*2.5)	1기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38)	봉분(2*2.5)	1기			
		거창	가조	석강	산7	상석	화강암 (106*75*28)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혼유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받침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하박석	-	1식			
137 13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7	향로석	화강암 (34*15*20)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둘레석	화강암 (166*264*60)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망두석	(30*200)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잔디조경	(900*800)cm	72㎡			
139 14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39)	봉분(2*2.5)	1기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56 현대빌라 2층 201	이병춘	
		거창	가조	석강	산7	분묘(140)	봉분(2*2.5)	1기			
		거창	가조	석강	산7	상석	화강암 (107*76*28)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혼유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받침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하박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향로석	화강암 (60*20*20)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7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0*20)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7	둘레석	화강암 (167*273*55)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7	망두석	화강암	2EA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30*170)cm					
		거창	가조	석강	산7	잔디조경	(1000*1000)cm	100㎡			
15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15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51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15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5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15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5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15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5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159)	봉분(합장)	1기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용지@ 306-503	강재운	
		거창	가조	석강	산8	상석	화강암 (100*70*25)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8	반월석	화강암 (65*10*45)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8	향로석	화강암 (20*15*16)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8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5*60)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8	망두석	화강암 (25*135)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8	잔디조경	(1000*1000)cm	100㎡			
16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22-2	분묘(160)	봉분(합장) (3*3)	1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이리 145-5	오길환	
		거창	가조	석강	산22-2	상석	화강암 (100*70*24)cm	1EA			
16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22-2	혼유석	-	1식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이리 145-5	오길환	
		거창	가조	석강	산22-2	받침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22-2	하박석	-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22-2	반월석	화강암 (70*5*35)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22-2	향로석	화강암 (43*17*22)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22-2	축대 (외축)	자연석 (1400*20*40)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22-2	망두석	화강암 (24*145)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22-2	잔디조경	(800*1200)cm	96㎡			
16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22-1	분묘(16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22-1	분묘(16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22-1	분묘(16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6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5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6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6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6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6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6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6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16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700	분묘(16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7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7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5	분묘(17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700	분묘(17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1	분묘(17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5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7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7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78 17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7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7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8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80)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231	박분금	
		거창	가조	석강	산3-3	잔디조경	(800*700)cm	70㎡			
18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81)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242	신창호	
		거창	가조	석강	산3-3	잔디조경	(1000*700)cm	70㎡			
18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82)	봉분(2*2.5)	1기	서울시 종암동 134-1 레이안 종암3차@ 111-702	최재식	
		거창	가조	석강	산3-3	축대 (외축)	자연석 (700*20*25)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3-3	조경잔디	자연석 (700*20*25)cm	49㎡			
18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3	분묘(184)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86 18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43	분묘(18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43	분묘(18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18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4	분묘(18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4	상석	오석 (106*77*24)cm	1EA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혼유석	-	1식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받침석	-	1식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하박석	-	1식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향로석	화강석 (25*25*20)cm	1EA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축대 (외축)	장대석 (3500*30*90)cm	1EA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화병	화강석 (17*30)cm	1EA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주목	R50, H120	3주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향나무	R60, H50	25주		“	“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석강	산3-4	황금측백	R20,H50	16주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영산홍	R15,H30	30주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단풍나무	R40,H180	5주		“	“
		거창	가조	석강	산3-4	잔디조경	(2000*1500)cm	300㎡		“	“
190 19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4	분묘(19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4	분묘(19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4	상석	화강석 (106*75*28)cm	1EA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혼유석	-	1식		“	
		거창	가조	석강	산3-4	받침석	-	1식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하박석	-	1식		“	
190 19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4	축대 (내축)	장대석 (800*25*15)cm	1식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4	축대 (외축)	견치석 (1000*25*120)cm	1식		“	
		거창	가조	석강	산3-4	둘레석	화강석 (182*255*68)cm	2EA		“	
		거창	가조	석강	산3-4	망두석	화강석 (22*130)cm	2EA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황금측백	R15,H25	14주		“	
		거창	가조	석강	산3-4	향나무	R30,H30	8주		“	
		거창	가조	석강	산3-4	주목	R50,H120	2주		“	
		거창	가조	석강	산3-4	잔디조경	(1500*1500)cm	225㎡		“	
192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5	분묘(192)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5	잔디조경	(600*700)cm	42㎡		“	
193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5	분묘(193)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5	잔디조경	(600*700)cm	42㎡		“	
198 199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98)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199)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산3-5	상석	화강석 (90*60*21)cm	1EA		“	
		거창	가조	석강	산3-5	혼유석	-	1식		“	
		거창	가조	석강	산3-5	받침석	-	1식		“	
		거창	가조	석강	산3-5	하박석	-	1식		“	
		거창	가조	석강	산3-5	향로석	화강석 (21*21*23)cm	1EA		“	
		거창	가조	석강	산3-5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0*30)cm	1식		“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석강	산3-5	돌레석	화강석 (166*266*60)cm	2EA		“	
		거창	가조	석강	산3-5	망두석	화강석 (22*160)cm	1EA		“	
		거창	가조	석강	산3-5	잔디조경	(1000*800)cm	80㎡		“	
200 20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13	분묘(200)	봉분(2*2.5)	1식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13	분묘(201)	봉분(2*2.5)	1식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13	상석	화강석 (90*90*21)cm	1EA		“	
		거창	가조	석강	13	혼유석	-	1식		“	
		거창	가조	석강	13	받침석	-	1식		“	
200 201	묘지	거창	가조	석강	13	하박석	-	1식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석강	13	향로석	화강석 (21*21*30)cm	1EA		“	
		거창	가조	석강	13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0*30)cm	1식		“	
		거창	가조	석강	13	돌레석	화강석 (1000*20*30)cm	2EA		“	
		거창	가조	석강	13	망두석	화강석 (22*160)cm	1EA		“	
		거창	가조	석강	13	잔디조경	(1000*800)cm	80㎡		“	
203 204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203)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243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811-556	박창학 박기순	
		거창	가조	석강	산3-5	분묘(204)	봉분(2*2.5)	1기			
		거창	가조	석강	산3-5	상석	화강석 (97*64*20)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3-5	반월석	화강석 (70*8*40)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3-5	향로석	화강석 (20*15*12)cm	1EA			
		거창	가조	석강	산3-5	축대 (내축)	자연석 (600*20*40)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3-5	축대 (외축)	자연석 (1000*20*60)cm	1식			
		거창	가조	석강	산3-5	망두석	(22*130)cm	2EA			
		거창	가조	석강	산3-5	잔디조경	(1000*700)cm	70㎡			
210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25-3	분묘(210)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16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216)	봉분(2*2.5)	1기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23-1	박갑출	
217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217)	봉분(2*2.5)	1기			
218	묘지	거창	가조	석강	산8	분묘(218)	봉분(2*2.5)	1기			
21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분묘(219)	봉분(2*2.5)	1기			
219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3	잔디조경	(800*800)cm	64㎡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39-6	분묘(221)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거창	가조	도	산39-6	잔디조경	(500*500)cm	25㎡			
222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6	분묘(222)	봉분(2*2.5)	1기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우방오성타운 101-206	오상식	
		거창	가조	도	산39-6	잔디조경	(400*400)cm	16㎡			
225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25)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거창	가조	도	산39-1	잔디조경	(800*700)cm	56㎡		“	
22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26)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226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잔디조경	(800*700)cm	56㎡		연고자 불명	
227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분묘(227)	봉분(2*2.5)	1기		연고자 불명	
	묘지	거창	가조	도	산39-1	잔디조경	(800*700)cm	56㎡		“	